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국회에의 성과 보고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5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2
2. 국회에의 시행성과 보고	4
※ 참고자료	7
1.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주요내용	7

I. 제안경위

2025년 2월 21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개정안은 현행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10년</u>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5년</u> -----.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생물안전, 생태계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계획임.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 주기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¹⁾, ’25년 현재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16년~’25년)²⁾을 시행 중임.

다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으로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등의 여건 변화에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장기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수립 주기를 단축할 경우 기존 정책 효과 분석이 불충분하거나 정책의 잦은 방향성 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참고로, 환경 분야별 최상위 법정 기본계획인 ‘순환경제기본계획, 대

-
- 1)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2) 제1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1994년~2003년,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2006년~2015년,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2016년~202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음.
- 3)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기간(2035~2040년)동안 총 2억원(연평균 3300만원)으로 추계함.

기환경개선 종합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은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음⁴⁾.

참고로, 환경부는 수립 주기를 단축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 세부 법정계획인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 야생동물 질병관리계획 등을 통하여 정책 여건 변화를 신속·구체적으로 반영 가능하며, 필요시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

2. 국회에의 시행성과 보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시행성과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35~204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합계	연평균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현행(A)	200	-	-	-	-	-	200	33
	개정안(B)	200	-	-	-	-	200	400	67
추가재정소요(B-A)								200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순환경제기본계획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5)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② (생략)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u>자연환경보전정책</u>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 ----- ---국회에 제출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⁶⁾,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결과가 국회 등 외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성과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6)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2년마다 실시되는 분석·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의 체계적 관리와 국회의 예산 및 법안심의 등과의 연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78조제3항⁷⁾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주요내용

□ 개요

- (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 (계획기간) '16~'25 (10년)
- (성 격)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생물안전, 생태계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계획

□ 주요내용

- (비전)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
- (목표) 6대 목표 및 목표별 추진과제 수립
 - ①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국가핵심/광역/도시 생태축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 국제기준에 부합한 보호지역 확대 지정 등
 - ② 야생생물 보호·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체계 정비, 위해 우려종 확대 지정, 생태계 교란종 중점 퇴치, 야생동물 질병 전문기관 설립 등
 - ③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마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 생태복원 전문성 강화 등
 - ④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생물주권 확보 및 생물산업 육성 등
 - ⑤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국토-환경계획 연계수립 촉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참여 강화 등
 - ⑥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부처간, 지자체간 협력 강화, 시민참여 확대, 생물다양성 부국과의 협력 및 ODA 등 자연환경 국제협력 강화 등

※ 출처: 환경부